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15. 9. 23.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 5) 위원회평가: 원안 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7)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 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 (안 제 17조)
- 나.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다. 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38조)
- 라.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6조, 제44조,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3) 입법예고(2015.8.19. ~ 2015.9.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통우편의 방법으로”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미납구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로 하고, 같은 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납기 전 징수와 압류)”를 “(독촉절차 생략)”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를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 20조”로 한다.

제22조 중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에서 “국채·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후단 단서 중 “자력”을 “재산적 능력”으로 한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유보하여야 한다.”를 “보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보기간”을 “보류기한”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를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통정한”을 “서로 짜고한”으로 한다.

제46조 중 “제141조”를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제22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제22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p>
<p>제23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삭 제></p>
<p>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5. (생략)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 	<p>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1. ----- 공탁영수증 2. 국채·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 3.~ 5. (현행과 같음) 6. -----

<p>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p>	<p>-----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 -----</p>
<p>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p>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산적 능력 -----
<p>제28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p> <p>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p>	<p><삭 제></p>

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p>제29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삭 제>
<p>제30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p>	<삭 제>

<p>제36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p> <p>③ (생략)</p>	<p>제36조(공매처분 유보) ① ----- ----- ----- ----- ----- 보류할 수 있다.</p> <p>② ----- 보류기한</p> <p>----- ----- ----- 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1개월간</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p> <p>① (생략)</p> <p>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p>	<p>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 서로 짜고한</p> <p>----- ----- ----- -----</p>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 제141조제1항
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예산발생 사유 없음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벗어난 조항 및 조문의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세무1과 세무8급 이혜정(330-1191)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5.18>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5.5.18>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4조(채납처분의 중지)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채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납자(채납자와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채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절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 ④ 지방세에 관한 채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타법개정]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

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7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4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전문개정 2011.4.4.]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

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